

제11회 한국신재생에너지대상

(2017년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RPS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 안내

2017 . 4

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주 관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목 차

I. 포상종류	1
II. 포상수여	1
III. 추천(선정)분야 및 대상	1
IV. 포상방향 및 계획	1
V.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2
VI. 공적심사	6
VII. 접수방법	6
[별첨 1] 추천서 작성요령	8
[별첨 2] 추천서 및 공적조서 샘플	10
[별첨 3] 신청서류 양식	14
[별첨 4] 종합심사기준	20

I

포상종류

- 산업훈장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 산업포장
- 표창 (대통령,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개인(훈장, 포장, 표창) / 단체(표창)

II

포상수여(예정)

- 일시 : '17. 9월 21일(예정)
- 장소 : 일산 KINTEX(예정)

III

추천(신청) 분야 및 대상

분야	대상	추천(신청) 기준
기술개발	단체 및 개인	기업연구소운영, 국가과제 참여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신제품개발, 설비효율향상, 설비국산화 노력
시장활성화		수출, 투자확대, 제도제안,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보급실적 보유
상생발전 및 홍보 (사회공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술인력 양성, 소외계층 지원, 지역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교육활동 노력
공급의무화		공급의무화(RPS)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제도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목표달성에 기여 노력

IV

포상방향 및 계획

- 국정과제(신재생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 중점 발굴
- ICT를 활용한 신재생설비의 효율화 및 운영기술 향상에 공이 큰 자 발굴
- 수출확대 및 해외진출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유공자 발굴
- 신재생에너지관련 정책 참여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및 개선 기여도를 유공자 발굴 시 고려
-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수익환원 등을 통한 지역민 수용성향상 노력 반영
- RPS제도 활성화, 의무공급량 이행실적, 보급실적 향상에 이바지한 유공자 발굴

V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 기본원칙

-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2 수급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3 재포상 금지(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대통령 표창(11.3)을 받은 자를 추천(17.9, 6년 4개월 경과) : 훈장(추천 불가), 포장(추천 가능)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공무원*의 경우, 3년) 미경과자는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포함

4 추천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①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②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③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④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⑦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⑧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나.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①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②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③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①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②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③ 다만, 상기 ①, ②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및 법인(단체) (장관표창에 한함)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및 대표자와 그 임원 (장관표창에 한함)

-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 접속 → 사업과제 →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차.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을 고의로 허위기재하여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카.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의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

VI

공적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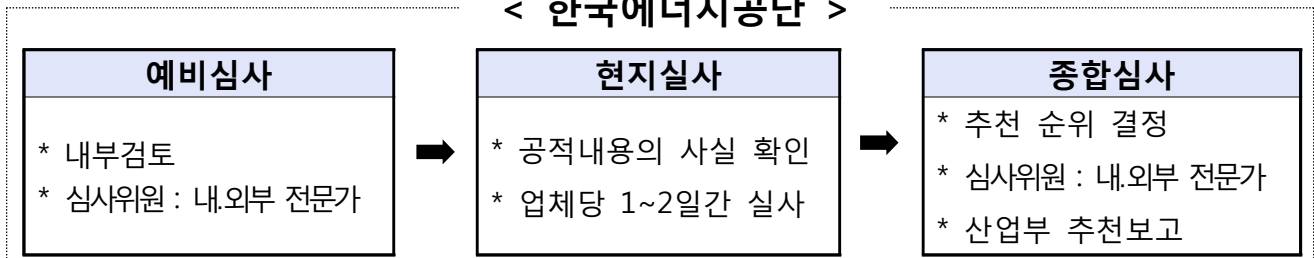
1. 공적평가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공적에 대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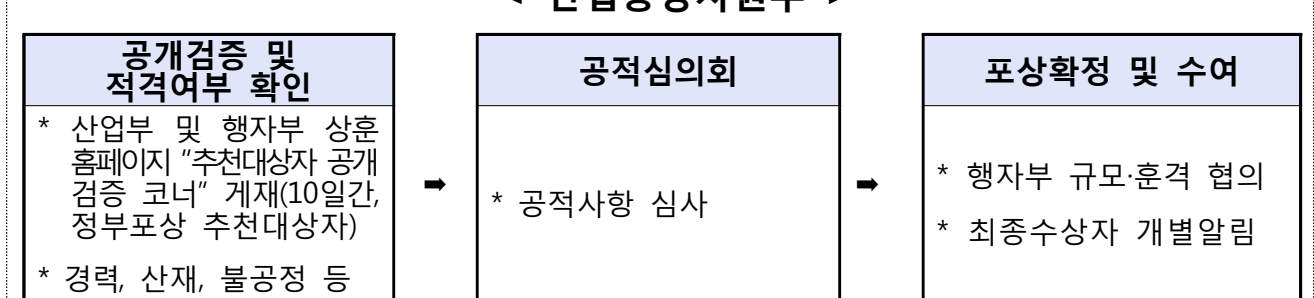
* 2017년 4월까지 과거 공적 적용, 추후 추천예정일('17.8.21) 기준으로 보완필요

2. 심사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



< 산업통상자원부 >



VII

접수방법

1. 접수방법

- 기 간 : ~ 2017. 5. 15(월) 23:59
- 방 법 : 유공자 포상 홈페이지(www.energyaward.or.kr)를 통해 신청
☞ 한국에너지대상 신청 → 한국신재생에너지대상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양식은 포상홈페이지(www.energyaward.or.kr) 사업소개-신청관련 서류 및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가능

제 출 서 류	비 고
[양식 1] 추천(신청)서 1부	
[양식 2] 경력사항 및 공적사항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양식 4]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양식 5]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에 한해서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공적내용에 관한 기타 증빙자료	공적조서 내용의 증빙서류(사진자료, 기사, 그래프 등) 첨부
최근 1년 이내 회계감사 보고서	단체 : 상장회사/개인 :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인 경우 제출

- * 파일명 예시(“한국에너지” 소속의 포상신청대상자가 “홍길동”일 경우)
(예시) 양식1-한국에너지(홍길동).pdf, 양식2-한국에너지(홍길동).hwp 등

< 서류접수 시 유의사항 >

- ※ 홈페이지를 통해 **5. 15(월) 23:59**까지 제출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인정
- 우편, 메일, 공문 등 홈페이지 이외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 ※ 작성 종이거나 임시저장 중인 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홍보실 이정현 대리
- 전화 : 031)260-4395 / 팩스 : 031)260-4388
- 이메일 : jhlee1202@energy.or.kr

추천(신청)서류 작성요령

□ 양식 1 - 추천(신청)서

구 분	내 용	비 고
추천분야	기술개발, 시장활성화, 상생발전 및 홍보(사회공헌), 공급의무화(RPS) 중 1개 분야만 √하여 신청	여러 공적이 종합될 경우 주된 공적분야로 신청
추천대상	(개인) 임원, 직원, 공무원, 주부/학생/일반 중 √ (단체)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공분야, 기타 중 √	
업체(단체)명	(개인) 소속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의 공식 명칭 기입 (단체) 신청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의 공식 명칭 기입	주식회사 또는 (주) 위치 주의 오기입에 따른 표창장 수정 불가
사업장 주소	(개인) 소속업체 주소 기입 (단체) 신청업체의 주소 기입	도로명 주소 기입
유공자 성명	(개인) 추천(신청) 유공자 성명 기입 (단체) 신청업체 대표자 성명 기입	한문, 생년월일 필수기입
수공기간	(개인) 신재생 경력시작일~산정기준일 기간 기입 (단체) 신재생업무계시일~산정기준일 기간 기입	산정기준일 : '17.8.21 (추천예정일) 수공기간은 공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시에만 인정됨
공적요지	공적조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70자 이상 작성	
추천(신청)인	추천기관 없이 개별 신청하는 경우 (개인) 상급자, 동료, 본인 등 기입 (단체) 신청업체 대표자 명의 직인 날인	

□ 양식 2 - 경력사항 및 공적사항

구 분	내 용	비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과거 포상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표창만 해당 • 포상훈격 및 수상 년·월·일, 포상부문 정확히 기재 (기한에 상환없이 모두 기재) 	
주요학력·경력 및 연혁	(개인) 주요학력 및 경력 기입	학력 : 최종학력기준 2개 경력 : 최초 입사연월을 포함하여 2개 이상
	(단체) 주요연혁 기입	연혁 : 단체설립일을 포함하여 2개이상
공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하 원칙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 • 공적성격(기술개발, 해외진출, 홍보, 사회공헌, 보급활동 등)에 따라 분류하여 기술 • 가급적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 (특히, 기술개발 실적 기술시 용어, 원리 등 이해하기 쉽게 표현) • 2,000자 이상으로 작성(부족 시 별지 이용)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등)는 별도 첨부

□ 양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개인) 추천 대상자 및 신청자 본인의 서명
- (단체) 작성불필요

□ 양식 4 -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 (개인) 추천 대상자 및 신청자 본인의 서명
- (단체) 추천 대상업체 및 신청업체 대표자의 직인 날인

□ 양식 5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피 추천인의 소속기관 인사담당과의 날인(서명도 가능) 및 소속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공문제출

경력사항 및 공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종료예정일 포함)	제재 사유	
해당사항 없음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1994년 3월 2일	우수납세자 국무총리포창		
주요 학력·경력 및 연혁 (개인 : 최종학력 / 단체 : 단체설립 이후부터 포상 추천일까지 에너지 관련 내용 모두 포함)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1980년 2월 3일	△△대학교 전기공학 학사	2003년 9월 3일	○○○○ 주식회사 태양광사업부 부장
1988년 2월 3일	△△대학교 전기공학 석사	2012년 10월 1일	○○○○ 주식회사 태양광사업부 이사
1995년 3월 4일	○○○○ 주식회사 신재생에너지사업부팀장		
공적사항			
<p>1. 대한민국 태양광산업 혁신의 주역</p> <p>상기 공적인은 2011년 ○○○○ 주식회사 태양광 사업부의 기술개발자로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결과 ○○○○ 주식회사가 고효율 태양광 시장에서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글로벌 경제위기 및 중국의 저가 제품 공략, 2014년부터 시작된 저유가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축소에도 불구하고 5년간('11년~) 매년 ~~억원의 예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투입하고 총 3개의 태양광 모듈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등 과감한 사업투자를 단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연매출 ◇◇◇억원을 달성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만한 성과를 내었습니다.</p> <p>* 매출추이 : ◇억원('12년)→◇억원('13년)→◇◇억원('14년)→◇◇◇억원('15년)</p> <p>** 사업초기('08년~'11년) 연평균 매출신장액 00%에 불과했으나 '12년 이후 연평균 매출증가율 00% 기록</p> <p>[첨부 1] 매출관련 증빙자료 참조 (투자액, 매출추이 등 계량적 성과를 사용한 공적기술, 연도 명시)</p>			

공적사항

2. 최고효율 모듈 개발 및 다수의 특허등록 등 우수한 연구투자 실적 창출

상기 신재생관련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산하 '그린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내 최고효율 태양광 모듈 개발 등 다수의 기술개발 실적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본사가 개발한 태양광 모듈 'high PV'의 경우 △△% 효율을 보이며 2015년 개발 이래 세계 최고 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제품은 시중 모듈 대비 1.5배의 효율(자사 A 모델 □□%, 미국 B사 BB모델 □□%……)을 보였습니다.

(기술 실적 자사 또는 타사 실적과 계량적 비교)

또한 지역기반의 실용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활동에 매진한 결과, ◇◇개 해외특허 등록, ◇◇개의 국내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특허실적의 경우 해외·국내 특허 구분, 출원·등록 구분하여 기술)*이 중 “……특허명……”과 “……특허명……”의 경우, 태양광 ○○○분야의 국내 첫 특허로서 명실상부 ○○○○ 주식회사가 국내 태양광 기술 선도 기업임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기술개발 실적, 특허 실적 등 그 기술·특허 내용을 알기쉬운 용어로 간략히 기술)

(논문의 경우 국내·해외 등재 구분, 주요 논문의 경우 논문지명, 문내용을그 내용을 알기쉬운 용어로 간략히 기술)

[첨부 2] 특허등록증 관련 증빙자료 참조

3. 태양광보급, 공급의무화 등 다각화된 사업분야 주도

상기 공적인은 당사 신재생에너지사업부의 실무진으로 근무하던 당시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설비 상용화 및 보급확대를 위하여 정부의 지역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지역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원간 융합과 구역복합을 추진하는 육복합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tCO2 저감량 : 8,025)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명	기간	총 보급량	태양광	에너지원……	비고
지역지원사업	'12~'16	○○○MW	…	…	
주택지원사업	'09~'16	○○○MW	…	…	
융복합지원사업					A군, B읍 …

(보급사업 참여 실적 사업별로 기술, 기간, 원별 총 보급량 명시)

또한 07년 이후 10년 연속 정부(한국에너지공단)의 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며 정부, 지자체의 보급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보급사업 고객대상으로 엄격한 운영·사후관리 서비스를 수행하며 고객만족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회사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무상 AS'(12년~) , '설비 교체주기 알리미 서비스'(13년~)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고객, 특히 신재생발전 설비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자가용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고객서비스 결과 서비스 실시 전 대비 고장률이 평균 ○○% 감소*하는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 모듈 고장접수 건수 : ○○○건('15년) → ○○('16년)*(사업 추진에 따른 계량화된 실적 명시)*

[첨부 3]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증빙자료 참조

공적사항

4. 태양광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및 국내 보급확대 기여

상기 공적인은 한국에너지회사의 주력 사업인 태양광을 통해 사회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2011년부터 “○○○○○ 복지사업”을 실시, ○○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총 ○○ MW 규모(총 ○○억원 투자)의 태양광 시스템 설비를 기부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주요 내용, 대상, 기간, 총지원액, 지원규모 등 상세히 기술)

또한 2012년 2월 ○○도 ○○군과 MOU를 통해(협업기관이 있을 경우 명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산간오지에 독립형 태양광 및 ESS를 설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이루어 냈습니다. '12년 이후 4년간 지속되고 있는 본 복지사업을 통해 태양광 총 ○○kW, ESS 총 ○○wh(총 ○○억원 투자)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개 지역 ○○가구, ○○○명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인해 전기를 공급받게 된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긍정적이 인식을 가지게 됨으로써 주민수용성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첨부 4] 사회공헌 사업계획서 및 보도자료 참조

5. 일자리 창출 실적

상기 공적인은 '12년 태양광사업부 이사로 선임된 이후 A군의 태양광설비 생산공장에 3개의 생산라인을 증설('16년 말 기준 총 7개 생산라인)하여 국내 태양광보급의 원활한 추진 및 수출물량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공장 확대를 통해 당사 기준 총 △△△명의 신규인력을 고용하고, 협력사 기준 □□□□명의 간접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신규채용 실적

* 총 신규채용 : ○○명('12년)→○○명('13년)→○○명('14년)→○○명('15년)→○○명('16년)

** 신재생 분야 신규채용 : ○○명('12년)→○○명('13년)→○○명('14년)→○○명('15년)→○○명('16년)

(신재생 분야의 신규채용 집계가능시 명시, 불가능 할 경우 일자리 창출 실적과 신재생과의 연계성 기술)

[첨부 5] 일차리 창출 실적 관련 증빙자료

6. 상생발전 실적..... 신재생에너지 홍보 실적 등

유공자의 공적성격(기술개발, 보급활동, 정책개선 활동, 상생발전, 홍보 등)에 따라 분류하여 기술

(양식 2)

경력사항 및 공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종료예정일 포함)	제재 사유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주요 학력·경력 및 연혁 (개인 : 최종학력 / 단체 : 단체설립 이후부터 포상 추천일까지 에너지 관련 내용 모두 포함)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공적사항			
<p><i>* 공적내용은</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적성격(기술개발, 해외진출, 홍보, 사회공헌, 보급활동 등)에 따라 분류하여 기술 2. 6하 원칙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 3.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 사용(특히, 기술개발 공적 기술 시) 4. 2,000자 이상으로 작성 5. 사진, 그래프, 증빙자료는 별도 제출 			

공적사항

(부족 시 증빙자료 별도 제출)

(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는 유공자 포상 공적심사, 후보자 추천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정보 수집·이용목적 및 범위

- 『제11회 한국신재생에너지대상』 심사 및 포상 후보자 추천 관련 범죄경력, 정부포상 취소(상훈법 제8조), 산업재해 등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임금체불,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인한 명단 공개(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여부 조회
- 포상 후보자의 공개 검증을 위한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및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 공적사항 공개

2. 수집 항목

- 업체(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주소
- 포상 피추천인의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의 경우)) 및 개인정보항목(성명,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전화번호, E-mail, 국적(외국인의 경우))

3.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제11회 한국신재생에너지대상』 관련 업무 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포상 추천(신청) 서류 제출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까지 유효함

4.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포상 관련 각종 법령 및 지침상의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성명 : (인)

※ 본 동의서는 모든 추천대상신청자가 작성·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의 자필서명을 기재하여야 함

(양식 4)

장관포상에 대한 동의서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 직위 (급) :
- 성 명 :

포상추천 훈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제11회 한국신재생에너지대상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추천제한여부 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신재생에너지대상 종합심사기준

1 기술개발 분야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산업육성 가속화에 탁월한 성과를 낸 기업, 단체, 개인

* 아주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70점), 미흡(70~60점), 아주미흡(60점 이하)

심사항목	배점	점수(하단 : 접수번호, 업체명, 개인·단체구분)		
1. 개발된 기술의 창의성 ○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 실적 ○ 국내외 전문지 소개실적 ○ 국내외 수상 및 인증 수 ○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실적 ○ 유사기술대비 신규성, 비교우위성	35			
2. 기술개발의 대표성 ○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 부문대표 사례로서의 적절성 ○ 부문대표 수상자로서의 업적의 적절성	35			
3. 개발된 기술의 파급효과 ○ 타 연구개발에 미친 영향 ○ 애로기술 개발을 통한 관련기업의 수혜정도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대한 기여 ○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국산화 실적 ○ 해외에 국내 기업의 인지도 및 경쟁력 제고에 미친 영향	20			
4.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자의 노력 ○ 기술개발성과에 대한 유공자의 기여도 ○ 연구자가 관련 프로젝트 등에 쏟은 노력	10			
계	100			
심사일자	20 .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② 시장활성화 분야

♣ 신재생에너지 수출, 투자확대, 제도제안, 사업확대 등 시장활성화에 탁월한 성과를 낸 기업, 단체, 개인

* 아주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70점), 미흡(70~60점), 아주미흡(60점 이하)

심사항목	배점	점수(하단 : 접수번호, 업체명, 개인·단체구분)		
1. 시장활성화 노력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매출, 수출, 투자 실적 ○ 신재생에너지 보급(보급용량, 발전량) 수행성과 ○ 소속기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활동 				
2. 공적의 파급효과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창출을 통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미친 영향 ○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실적(기여도) ○ 국가 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 				
3. 공적의 대표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괄목할 만한 주요 실적 보유여부 ○ 시장활성화 대표 사례로서의 적절성 ○ 부문대표 수상자로서의 업적의 적절성 				
4. 유공자의 기여정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의 독창성 ○ 시장활성화에 대한 유공자의 기여도 				
계	100			
심사일자	20 .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3 상생발전 및 홍보(사회공헌) 분야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기부하는 신재생에너지 나눔을 실천하거나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상생발전 및 홍보에 탁월한 성과를 낸 기업, 단체, 개인

* 아주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70점), 미흡(70~60점), 아주미흡(60점 이하)

심사항목	배점	점수(하단 : 접수번호, 업체명, 개인·단체구분)		
1. 수행사업의 파급효과 ○ 심사대상자의 공적(상생발전, 사회공헌, 홍보)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한 정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에 기여 정도 ○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대국민 신재생 에너지 인식확대에 기여한 정도	35			
2. 수행사업의 적절성 ○ 공적의 추진성과 실적(지원액, 수행건수 등) ○ 수행사업의 전문성(담당인력, 예산, 추진체계) 보유여부 ○ 수행사업의 지속성 의지	35			
3. 수행사업의 대표성 ○ 상생발전 및 홍보 대표사례로서의 적절성 ○ 부문대표 수상자로서의 업적의 적절성	20			
4. 유공자의 기여도 ○ 신재생에너지 상생발전 또는 홍보에 대한 유공자의 노력 ○ 신재생에너지 상생발전 또는 홍보에 대한 유공자의 기여도	10			
계	100			
심사일자	20 .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4] 공급의무화(RPS) 분야

♣ RPS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제도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목표달성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아주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70점), 미흡(70~60점), 아주미흡(60점 이하)

심사항목	배점	점수(하단 : 접수번호, 업체명, 개인·단체구분)		
1. 보급촉진 노력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S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인지도 제고노력 ○ RPS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활동 ○ RPS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제도 개선 노력도(민원해소, 제안 등) 				
2. 추진성과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S 의무공급량 이행실적(공급의무자) ○ RPS 제도 관련 추진실적 또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실적 ○ RPS 제도 관련 산업발전 실적(매출, 고용창출 등) ○ RPS 제도 관련 사회적 기부활동 실적 				
3. 수행사업의 대표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S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노력의 적절성 ○ RPS 유공자 업적 대표사례로서의 적절성 				
4. 유공자의 기여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S 제도 정착활동의 독창성 ○ RPS 제도 활성화 노력도 ○ 향후 제도 활성화 동기부여 기여도 				
계	100			
심사일자	20 .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